안전·공공질서

06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책임성 개선

추진부서 | 경기도 연천군 건설과, 031-839-2452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개선배경

- 현행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상 부실공사 신고 · 접수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여 신고 가능 기간이 짧아 실제 하자가 드러나는 시점에는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 이로 인해 소극행정 유발 및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며, 시공자 및 관리자에 대한 사후 책임성 부재로 인해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규정이 불명확하여 추후 발생 가능한 한전사고에 대한 관리책임에 공백 우려가 존재.

개선내용

-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상 부실공사 신고 · 접수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확대하여 부실공사 발생 시 보다 장기간에 걸쳐 신고가 가능해져, 시공자 및 관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개선과정

- '24. 12. ~ '25. 1. 방침 수립 및 예비심사,
  '25. 1. 입법예고,
  '25. 1. ~ 2. 법제심사 및 심의,
  '25. 3. 의회 의결 및 공포

개선효과

- 기존에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접수가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하자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기간이 경과되어 신고가 반려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신고 접수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공익신고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공자 및 관리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책임 의식 부여